##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최인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13 발의연월일: 2020. 6. 3.

발 의 자:최인호·이학영·송옥주

박광온 · 김병욱 · 전재수

윤관석 · 박 정 · 어기구

강준현 · 서영석 · 김두관

양경숙 • 이수진 • 김진애

의원(15인)

### 제안이유

현행법에서는 중소기업이 사업제안 등 거래교섭 과정에서 대기업 등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에게 제공한 아이디어를 대기업 등이 그 제공목적에 반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 등 행정구제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구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아이디어 탈취행위로 인한 중소기업 등의 피해는 회사 존립의 문제가 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한 실정임. 따라서 아이디어를 탈취한 대기업 등에게는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보다 무겁게 부과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.

한편, 현재 행위의 중지 및 표지의 제거 · 폐기 등으로 예시된 시정

권고의 범위가 제한적이므로 정부가 피해기업들의 다양한 구제방법들을 도모하도록 하고,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치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는 그 시정권고의 내용을 공표하여 국민이 위해(危害) 정보를 정확하게 인식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며, 부정경쟁행위에 해당 여부에 대한 행정조사가 진행되는 중에 당사자가 「발명진흥법」상의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행정조사를 중지하고, 분쟁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행정조사를 중결하여 조기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는 등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.

### 주요내용

- 가. 부정경쟁행위 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행정조사가 진행 중에 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행정조사를 중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(안 제7조제3항, 제4항 및 제6항 신설).
- 나.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범위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행위를 중지하거나 표지를 제거 또는 폐기할 것 등의 예시를 삭제하고,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및 재산권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(안 제8조제2항 신설).
- 다. 아이디어 탈취행위(제2조제1항차목)에 해당하는 경우 손해로 인정 된 금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함(안 제14조의2

제6항).

##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, 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특허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조사당사자 등이 조사 진행 중에 「발명진흥법」 제43조에 따른 조정(이하 "분쟁조정"이라 한다)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.
- ④ 특허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분쟁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.
- ⑥ 그 밖에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8조의 제목 "(위반행위의 시정권고)"를 "(위반행위의 시정권고 등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 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"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표지를 제거 또는 페기할 것 등 그 시정"을 "시정"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특허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권고 사실을 일간 신문 또는 소속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할 수 있다.
- 1. 위반행위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및 재산권 보호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민들이 즉시 알 필요가 있는 경우
- 2. 향후 유사한 위반행위 발생이 예상되는 등 위반행위의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혼동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
- 3. 시정권고 전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로 인해 시정권고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 전달이 필요한 경우
- 4. 제8조에 따른 시정권고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제14조의2제6항 중 "영업비밀 침해행위가"를 "제2조제1호차목의 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가"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	제7조(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
등) ①・② (생 략)	등) ①・②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③ 특허청장, 시·도지사 또는
	<u>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</u>
	라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조
	사당사자 등이 조사 진행 중에
	「발명진흥법」 제43조에 따른
	조정(이하 "분쟁조정"이라 한
	다)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조
	사를 중지할 수 있다.
<u>&lt;신 설&gt;</u>	④ 특허청장, 시·도지사 또는
	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3항에 따
	라 신청한 분쟁조정이 성립된
	경우에는 그 조사를 종결할 수
	<u>있다.</u>
③ (생 략)	<u>⑤</u> (현행 제3항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⑥ 그 밖에 부정경쟁행위 등의
	조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
	<u>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
제8조(위반행위의 시정권고) 특허	제8조(위반행위의 시정권고 등)
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	<u>①</u>
수·구청장은 제2조제1호(아목과	
카목은 제외한다)의 부정경쟁	

행위나 제3조,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위반행위 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 간을 정하여 <u>그 행위를 중지하</u> 거나 표지를 제거 또는 폐기할 것 등 그 시정에 필요한 권고 를 할 수 있다.

<u><신 설></u>

 <u>시정</u> -	

- ② 특허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권고 사실을 일간신문 또는 소속 기 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할 수 있다.
- 1. 위반행위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및 재산권보호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할수 다가 있어 국민들이 즉시알 필요가 있는 경우
- 2. 향후 유사한 위반행위 발생이 예상되는 등 위반행위의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혼동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
- 3. 시정권고 전 오보 또는 추측 성 보도로 인해 시정권고 관

제14조의2(손해액의 추정 등) ① ㅈ ~ ⑤ (생 략)

⑥ 법원은 <u>영업비밀 침해행위</u>
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 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.

⑦ (생 략)

런 .	위반형	뱅위에	대한	명회	한
<u>사실</u>	관계	전달이	필요	한 경	<u> </u>
4. 제8	조에	따른	시정권	고를	. 3
회 🌣	기상 병	받은 경	우		
제14조의	2(손	해액의	추정	등)	1
~ ⑤	(현행	]과 같-	<u> </u>		
6		제2	조제1호	도차목	의
행위	및 여	영업비밀	] 침히	행위	<u>가</u>

⑦ (현행과 같음)